

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마음편한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7.12.26
3. 주요 정정사항
 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갱신
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 -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
 - 법 개정사항 반영

[규약]

항 목	변경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33조(이익 분배)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(생략)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단서 삭제> 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0'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부 칙	-	-	부칙(9)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등록신청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[1] 투자전략			
4. 운용전문인력	결산갱신	-	최근일자로 업데이트
5. 투자실적 추이	결산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			
2. 투자위험 등급 분류	연환산 표준편차 수치 반영	연환산 표준편차 : 11.19% 위험등급 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	연환산 표준편차 : 11.33% 위험등급 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등급 변동 없음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갱신에 따른 연혁 추가		2017.12.26 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갱신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-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- 법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	결산갱신		기준일자로 업데이트(운용현황 등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	다. 모자형 구조 -유리마음편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-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<신설>	다. 모자형 구조 -유리마음편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-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-유리Daily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모투자신탁의 변경내용 반영	동일종목 투자 나. (전단 생략)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서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	동일종목 투자 나. (전단 현행과 동일),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u>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서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연환산 표준편차 수치 반영	<u>연환산 표준편차 : 11.19%</u> <u>위험등급 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	<u>연환산 표준편차 : 11.33%</u> <u>위험등급 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 ➔ 등급 변동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	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	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

		<p>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<신설></p>	<p>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0'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<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></p> <p>2016년7월21일 이후 매년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및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. 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소득 등은 매년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	---	---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결산 갱신	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
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일자 업데이트	라. 운용자산규모	최근일자로 업데이트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
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	<p>라. 손해배상책임</p> <p>③ 증권신고서 -- 않습니다.</p> <p>-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)</p>	<p>라. 손해배상책임</p> <p>③ 증권신고서 -- 않습니다.</p> <p>-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</p>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	---